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9-0059439
 (43) 공개일자 2019년05월3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3B 13/20 (2006.01) *A43B 21/28* (2006.01)
A43B 7/32 (2006.01) *A43B 9/14* (2006.01)
 (52) CPC특허분류
A43B 13/20 (2013.01)
A43B 13/40 (2013.01)
 (21) 출원번호 10-2017-0157053
 (22) 출원일자 2017년11월23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71) 출원인
이혜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3길 26-1, 101동 604호
 (증산동, 우방 아파트)
 (72) 발명자
이혜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3길 26-1, 101동 604호
 (증산동, 우방 아파트)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54) 발명의 명칭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

(57) 요약

본 발명은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에 관한 것으로, 여성 구두의 통굽의 무게를 줄이고 통굽 전체에 쿠션감을 제공하는 여성 구두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 도1



(52) CPC특허분류

A43B 21/28 (2013.01)

A43B 7/32 (2013.01)

A43B 9/14 (2013.01)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여성 구두 구성에 있어서,

내부에 입체스트링구조의 에어 튜브를 삽입하여 신발 밑창을 구성할 수 있는 여성구두로 구성되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

발명의 설명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뒷굽의 높이가 높은 하이힐 구두를 통굽으로 구성하는 여성 구두에 관한 것으로, 뒷굽이 높은 통굽 여성 구두를 편리하고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여성 구두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0002] 일반적으로 뒷굽이 높은 여성구두는 굽이 일체형으로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통굽의 경우 나무나 아크릴, 플라스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 무겁고 쿠션감이 없어 신었을 때 편리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3] 본 발명은 상기 뒷굽이 높은 여성구두는 굽이 일체형으로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통굽의 경우 나무나 아크릴, 플라스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 무겁고 쿠션감이 없어 신었을 때 편리함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종래 여성 구두에 통굽 하이힐의 무게를 현격하게 줄여 편리하게 신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4] 본 발명은 통굽 하이힐 여성구두의 밑창 내부에 입체스트링 직조 구조의 에어튜브를 삽입하여 구두 전체의 무게를 줄이고 쿠션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0005] 본 발명은 나무나 아크릴, 플라스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 무겁고 쿠션감이 없는 통굽 하이힐 여성구두의 밑창 대부분을 에어쿠션으로 채움으로써 제조 방법 및 그 단가를 줄이고, 특히 무게를 기존 나무 통굽대비 1/3이상 줄여 가볍게 하고, 에어쿠션에 의한 쿠션감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이고, 사용자측면에서는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 [0006] 도 1은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사시도
- 도 2는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구조도
- 도 3은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단면도
- 도 4는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평면도
- 도 5는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정면도
- 도 6은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측면도

도 7은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밑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0007] 본 발명의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바람직한 구체적인 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첨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0008] 또한,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적인 실행 예를 설명할 것이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하거나 제한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실시될 수 있으며, 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실시 예는 예시를 위한 것임이 명백할 것이 물론이다.
- [0010] 이와 같은 본 발명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 구두의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 [0012] 도 1 은 본 발명의 발명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사시도를 예시한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하이힐 통굽 여성구두의 형상과 유사한 모습을 갖는다. 단, 입체스트링 직조 에어쿠션을 외부로 일부 노출 시킬 것인지 아니면 밑창 내부에 완전히 매립할 것인지에 따라 구두의 디자인 형상이나 심미감이 달라지는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하거나 제한되지 않고 두 방안 모두를 포함한다.
- [0014] 도 2는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구조도를 도식한 도면이고, 도3은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단면도를 도식한 것이다.
- [0016] 먼저 도 2에서 구두 상피(11)의 형상은 도식된 형상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디자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두 안창(12)은 종래의 여성구두에 적용한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구두 외피(13)는 도식된 바와 같이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구두 상피(11)와 구두 밑창(17)을 본드를 사용하여 견고히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 [0018] 상기 구두 외피(13)의 형상이나 패턴, 천공(홀), 돌기 혹은 비즈, 팬던트 같은 별도 장식 부착의 형상에 따라 구두의 디자인 형상이나 심미감이 달라지는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모두는 디자인을 포함한다.
- [0020] 상기 구두 외피(13)의 내부는 앞코 쿠션(14)과 입체스트링 직조 에어쿠션(16)으로 채워지는데 여성구두에 공용으로 사용할 크기의 입체스트링 직조 에어쿠션(16)을 규격화 적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인데, 이때 구두 외피(13)의 구두 굽 외형적 형상은 내부 입체스트링 직조 에어쿠션(16)의 형태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므로 이때 구두 외피(13)의 형상이나 패턴, 천공(홀)의 형상에 따라 구두의 디자인 형상이나 심미감이 달라진다.
- [0022] 상기 구두 외피(13)는 내부 앞코 쿠션(14)과 입체스트링 직조 에어쿠션(16)을 견고히 잡아주면서 상하로는 구두 상피(11)와 구두 밑창(17)을 견고히 결합되게 된다.
- [0024] 구두 밴드(15)는 하이힐 통굽 여자 구두의 특성상 착용하고 걸었을 경우 발이 구두에서 탈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장치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0026] 첨부된 도 4는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평면도이며,
- [0027] 도 5는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정면도이고,
- [0028] 도 6은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측면도이며,
- [0029] 도 7은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밑면도이다.
- [0031] 상기 도식들은 본 발명의 발명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설명도이다.
- [0033] 특히 7은 통굽 내부에 에어튜브를 장착한 여성구두의 밑면도에서 도식된 것 같이 사용성이나 안전성을 위하여 구두 밑창(17)의 돌기 패턴을 캡퍼스화나 워킹슈즈와 같이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0035] 상기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 예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발명의 출원 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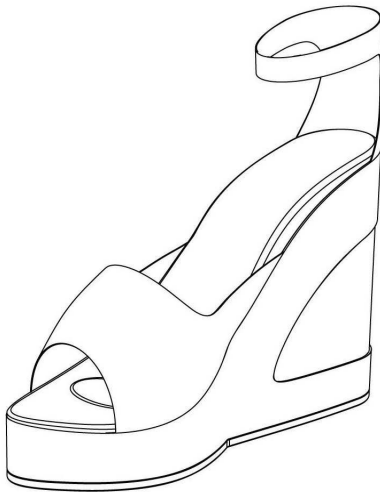
[0037] 자세하게 도시되고 설명되어 있는 바람직한 실시 예와 관련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당업자에게는 다양한 수정 및 개선은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보호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부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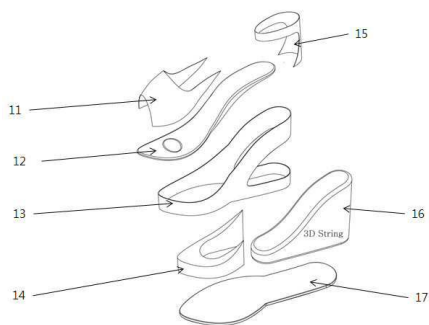
- [0038]
- 11. 구두 상피
 - 12. 구두 안창
 - 13. 구두 외피
 - 14. 앞코 쿠션
 - 15. 구두 밴드
 - 16. 입체스트링 직조 에어쿠션
 - 17. 구두 밑창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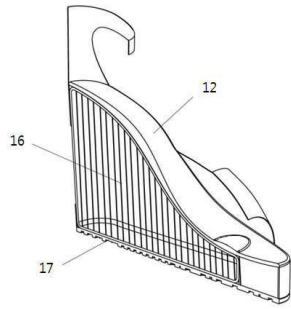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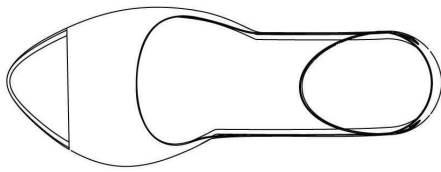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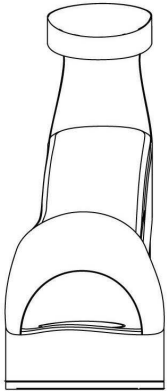
도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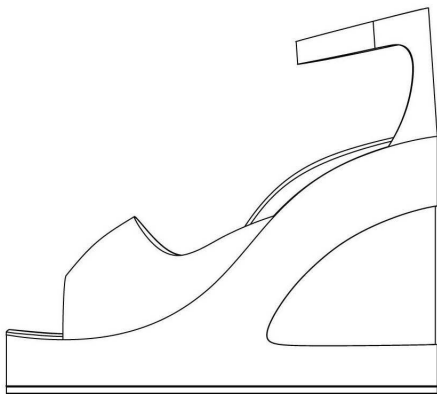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